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70
------	------

2020. 11. 23.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0월 16일, 이영실 의원 외 29명

나.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6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0.11.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영실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0.6.4. 공포 시행)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서울시의회에 결산서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출자·출연기관이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안 제22조의2)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출자·출연기관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는 결산서 제출 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에서 “2개월 이내” 로 단축하여 출자·출연기관 재정운영의 특별성과 주민대표기관의 견제·감사권을 강화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현황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해 서울시(이하 “시”)는 현재 20개 출자·출연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¹⁾ 서울의료원과 세종문화회관 등 자체수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로부터의 출연금과 위탁사업비를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시 산하 5개 투자기관(서울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제외.

통해 운영하고 있음.

- 2020년 10월말 현재 출자·출연기관의 정원은 6,096명이며, 전체 예산 규모는 1조 1,684억원이고 이 가운데 시의 출연금은 5,977억 6천만원임.
-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출연금이 출자·출연기관에 매년 투입되면서 시의 재정운영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 분야에 대한 내·외부 통제장치를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다. 결산서 제출기한 강화 (안 제22조의2제2항)

-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시의회의 재정통제를 강화하고자 2018년부터 출자·출연기관이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 이는 출자·출연기관의 결산을 비롯하여 재정 전반에 대해 시의회의 감독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조치였음.
- 개정안은 「지방출자출연법」의 개정·시행(2020.6.4.) 으로 결산 완료 시기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단축됨에 따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는 결산서 제출기한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 에서 ‘2개월 이내’ 로 변경하는 것임.

<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사항 >

종 전	현 행(2020.6.4.)
제19조(결산)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결산)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생략)

- 현행 법률에 따르면, 정부 공공기관의 결산서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일부 출자출연기관(서울 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도 개별 법률에서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별 결산서 근거법령 >

구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역신용보증재단	지방의료원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②	「지방공기업법」 제35조②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0조②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①
작성주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관리자	지역신용보증재단	지방의료원장
결산서	제출: 2월말	작성: 사업연도 종료 2개월 이내	제출: 사업연도 종료 2개월 내	제출: 2월말
피제출자	공기업: 기획재정부장관 준정부기관: 주무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 따라서 출자·출연기관의 결산서 제출시점을 공공기관 등의 결산서 제출기한인 2월말로 일치시킴으로써 신속 원활한 결산사무의 진행과 함께 출자·출연기관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시의회의 민주적 통제권을 강화하는 입법 효과가 있음.

- 다만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결산완료시점을 2월말로 정하고 이후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법에서 정한 결산완료시점과 결산서 작성 및 제출시점간의 시차를 고려하지 않고 2월말로 일괄 앞당기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정책적 판단이 요구됨.

< 수정 의견 >

현 행	수정 의견
제22조의2(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 ① (생 략) ② 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2조의2(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 -----. ③ (현행과 같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출자·출연 기관의 결산완료 후 결산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수정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출자·출연 기관의 결산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토록 함 (안 제22조의2제2항).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970
----------	---------

제안년월일 : 2020년 11월 23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출자·출연 기관의 결산완료 후 결산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출자·출연 기관의 결산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토록 함 (안 제22조의2제2항).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2조의2제2항 중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를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로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 중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를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의2(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p> <p>① (생 략)</p> <p>② 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u>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u>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생 략)</p>	<p>제22조의2(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u> ----- -----.</p> <p>③ (현행과 같음)</p>